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전개와 정의의 확대

박제철

((사)강원한국학연구원 · 연구교수 · 근대철학)

- I. 서론
- II. 개인주의로서의 사회계약론
- III. 자연상태에 대하여
 - 1. 홉스의 경우 - 자연상태=전쟁상태
 - 2. 로크의 경우 - 자연상태≠전쟁상태
- IV. 사회상태에 대하여
 - 1. 홉스의 경우 - 왕만이 주권자
 - 2. 로크의 경우 - 다수가 주권자
- V. 소유에 대하여
 - 1. 홉스의 경우 - 모든 것은 왕의 것
 - 2. 로크의 경우 - 소유의 정당화와 소유의 한계
- VI.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흄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비교/분석한 후, 이 두 철학자의 서로 다른 입장이 정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두 사람의 사회계약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세부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서론에서는 우선,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정의justice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흄스와 로크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선 흄스의 주장이다.

자연법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법칙 지금까지 너무 세밀하게 자연법에 대한 연역적 추론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살기에 너무 바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아무리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 자연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¹⁾

다음은 로크의 주장이다.

5. 저 현명한 후커는 이 같은 인간의 자연적인 평등을 의심할 여지없이 그 자체로 너무나 명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의 토대로 본다. 그리고 그는 그 토대에 기초하여 인간이 상호 간에 부담하는 의무를 기술하고 그것으로부터 정의(justice)와 인류애(charity)라는 위대한 원리를 도출한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1) 토머스 흄스, 『리바이어던』, 최공웅, 최진원 옮김, 동서문화사, 2022, 162-163쪽.

비슷한 자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 못지 않게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 내가 해를 가하면 나 역시 고통을 당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사랑을 그들이 내게 보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²⁾

이 둘 모두 정의(자연법)를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부르는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정의justice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데, 타인이 나에게 해주기를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타인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타인이 나에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타인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정의를 이렇게 공식화하면, 홉스로부터 로크에 이르기까지 사회계약론의 변천 과정을 우리는 정의의 확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홉스의 경우, 왕-국민 관계는 왕이 일방적인 우위를 가지는 관계가 되며, 이것은 역지사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지만, 로크의 경우 왕-국민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역지사지의 관계를 잘 보장하는 그러한 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두 가지 관점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정치적 역학관계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역학관계의 관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홉스의 경우,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며, 모든 것은 왕의 소유지만, 로크의 경우, 왕과 국민은 같은 권력을 가지며, 모든 것은 노동을 투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제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비교/분석하며, 두 사회계약론이 어떻게 정의의 확대와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 옮김, 까치, 2023, 12-13쪽.

II. 개인주의로서의 사회계약론

홉스 이전에 국가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국가가 먼저 있고, 인간은 그러한 국가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란 자연의 피조물이며 따라서 인간도 자연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과 국가를 밀접히 연관시키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사회 속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나 스스로 자족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도 갖지 않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면 신임에 틀림없다.〉 인간의 본성은 운명적으로 국가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고, 국가도 다른 공동 사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선을 목적으로 성립되며〉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³⁾

이러한 이해에서는, 국가라는 것이 먼저 있고, 인간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정치 체계 내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홉스는 이러한 이해와는 다른 사고실험을 구상한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고실험에서, 국가와 인간 사이의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와 정반대로 설정된다. 즉, 개개인들이 먼저 존재하고, 그러한 개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이론을 사회계약론이라고 한다. 홉스에 의해 시작된 사회계약론, 그리고 사회계약론의 형태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배치되는 로크의 사회계약론,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비교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우선, 홉스와 로크가 정치권력의 무게추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둘 사이에

3) 새뮤얼 이녹 스탬프 · 제임스 피저,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이광래 옮김, 열린책들, 2004, 164쪽.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홉스와 로크가 사유재산에 대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자는 홉스에서 로크까지의 사상 변화가, 정치권력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해, 어떻게 정의에 대한 관념을 발전시키는지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재산의 한계에 대한 로크의 사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로크의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현재 얻어낼 수 있는 교훈, 지침 등을 상상해보도록 할 것이다. 일단 사회계약론의 일반적인 형태에 근거해 자연상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III. 자연상태에 대하여

1. 홉스의 경우 - 자연상태=전쟁상태

자연상태란 사회계약을 맺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자연상태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가장 큰 입장 차이는 다음과 같다. 홉스의 경우, 자연상태는 전쟁상태이다.⁴⁾ 반면 로크의 경우 자연상태는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그러하듯, 전쟁상태가 아니다. 로크의 자연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지만, 언제나 전쟁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홉스가 자연상태를 전쟁상태와 동일시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홉스

4) “당사자 양쪽이 현재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약이 자연상태, 즉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상태[자연상태=전쟁상태]에서 맺어졌다면, 이 계약은 무효이다.”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최공웅, 최진원 옮김, 동서문화사, 2022, 142쪽.)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경쟁(competition)이며, 두 번째는 불신(diffidence)이고, 세 번째는 공명심(glory)이다.⁵⁾

정치국가들 외부에는 언제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 존재한다. 이로써 다음 사실이 분명해진다. 즉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이 살아갈 때는 전쟁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⁶⁾

자연상태, 이러한 전쟁상태는 인간에게 불편함을 끼친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인간은 자연상태, 전쟁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와 같은 전쟁의 여러 가지 불편함 따라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 적(敵)인 상태, 즉 전쟁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 이외에는 어떤 안전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노동에 대한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한 데 대한 보상이 불투명하다. [...]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폭력에 의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는 것이다.⁷⁾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 동물들은 이러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상

5)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최공웅, 최진원 옮김, 동서문화사, 2022, 131쪽.

6)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31쪽.

7)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31-132쪽.

황에 대해 이를 피하고자 하는 동력이 없다. 하지만 인간은 이를 피하고자 하는 동력이 있는데, 그 동력이란 바로 신이 인간의 정신에 새겨 놓은 자연법이다. 사회를 이루기 전에도, 그래서 사회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에게는 그들의 이성에 새겨진 자연법이 있다. 홉스는 이러한 자연법에 대해 19가지를 제시한다. 필자는 이 중 처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1의 자연법은 다음과 같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이성의 계율 또는 일반적 원칙이 나온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획득할 가망이 있는 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바라거나 사용해도 좋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1차적이고 기본적인 자연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여 자신을 방어할 권리’이다.⁸⁾

제1의 자연법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제1의 자연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홉스는 오해를 불러올 주장을 하는데, 법과 권리의 구분에 대한 것이다. 법은 명령이다. 권리는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1의 자연법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으로서 명령이다. 이와 관련된 인간의 권리에 대해 홉스는 보충을 하는데, 그것은, “너는 너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자연권이다. 동물에게는 “너는 너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자연권이 있다. 사자에게는 이러한 자연권이 그의 정신에 새겨져 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자연법은, 인간 이성에는 새겨져 있지만, 사자에게는 새겨져 있지 않

8)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36쪽.

다. 이러한 제1의 자연법으로부터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

제2의 자연법 평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령한 이 기본 자연법에서 다음과 같은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 ‘인간은 평화와 자기 방어를 위해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또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럴 경우에는 만물에 대한 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보유하는 한, 모든 인간은 전쟁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⁹⁾

제2의 자연법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제1의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된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자연법적 명령을 따르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나의 모든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해, 나와 타인을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나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다. 세 번째 자연법은 다음과 같다.

제3의 자연법, 정의 인간이 본디 지닌 자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을 경우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고 만다. 그러므로 제1 및 제2의 자연법은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는데, 여기서 제3의 자연법이 생겨난다. 그것은 ‘신약(約)을 맺었으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9)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36쪽.

10)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49쪽.

이렇게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2. 로크의 경우 - 자연상태≠전쟁상태

로크의 자연상태는 홉스와 상당히 다르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전쟁상태와 동일시하지만, 로크의 자연상태는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로서, 전쟁상태와 다르다.¹¹⁾ 이것은 로크의 주장이기는 한데,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로크의 자연상태는 언제든지 전쟁상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는 발끈한 성격이다.”와 “우리 아이는 착한데 발끈할 때가 있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쨌든, 이러한 해석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크는 자연상태와 전쟁상태를 구분한다. 로크의 자연상태는 다음과 같다.

4.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 기원으로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자연상태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타인의 의지(will)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人身, person)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자연상태는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모든 권력과 사법권(jurisdiction)은 상호적이며, 어느 한 인간도 다른 인간들보다 더 많이

11) 일부 사람들이 그 차이를 혼동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연상태와 전쟁상태 간의 명백한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통치론』의 역자인 문정인은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였다. “로크는 여기서 자연상태를 전쟁상태와 동일시하는 홉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 옮김, 까치, 2023, 26쪽)

가지지 않는다.¹²⁾

로크의 자연상태는 자유와 평등의 상태이다. 여기서 평등의 상태라는 것은, “A와 B는 서로를 단죄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로 읽혀야 한다.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만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곧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는 자연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¹³⁾

로크의 자연상태는 자유와 평등의 상태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반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러한 자연상태는 언제든지 전쟁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전쟁상태는 적의(敵)와 파괴의 상태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흥분한 심정과 성급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한 의도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선언한 경우에 그는 자신이 그러한 의도를 선언한 상대방과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¹⁴⁾

로크에게 있어 자연상태와 전쟁상태는 구분된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둘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12)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 옮김, 까치, 2023, 11-12쪽.

13) 존 로크, 앞의 책, 14-15쪽.

14) 존 로크, 앞의 책 24쪽.

일부 사람들이 그 차이를 혼동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자연상태와 전쟁상태 간의 명백한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두 상태는 평화, 선의, 상호부조 및 보존의 상태와 적의 악의, 폭력 및 상호 파괴의 상태가 서로 다르듯이 현저히 다른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히 자연상태이다. 그러나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인신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전쟁상태다.¹⁵⁾

이러한 전쟁상태를 끝내는 방법은 홉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상태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은, 전쟁상태의 쌍방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 그러한 법을 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판관의 존재, 그러한 판단에 근거해 적절한 법집행을 수행할 집행자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쌍방 간의 분쟁을 조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옮겨지게 된다.

IV. 사회상태에 대하여

1. 홉스의 경우 – 왕만이 주권자

홉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commonwealth,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15) 존 로크, 앞의 책, 26-27쪽.

궁극적 원인과 목적 그리고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보존과 그것을 통해 좀 더 만족스런 삶을 통찰하는 데 있다. [...] 다시 말해 이러한 통찰은 비참한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데 대한 것이다.¹⁶⁾

인간이 자연상태, 즉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은, 자기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자기보존을 위해 인간은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구속하고 억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끝내려면, 누군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권위에 대해, 홉스와 로크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간단히 말해, 홉스의 경우, 이러한 권위는 절대군주, 즉 왕에게 주어진다. 물론 홉스는 이러한 주권자를 바로 설정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결국 이 주권자는 왕이겠으나, 홉스는 이 권위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고찰한다. 홉스는 이 권위가 세 가지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본다. 왕에게(왕정), 혹은 귀족들에게(귀족정), 혹은 민중에게(민주정).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통 권력은 그들을 외적의 침입이나 서로의 침해로부터 방위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산물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만족스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공통의 권력을 확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그들 모두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또는 합의체를 임명하여 자신들의 인격을 위임하고, 그 위임받은 자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든 또는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든, 각자는 그 모든 행위의 당사자가 되고, 또한 당사자임

16)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최공웅, 최진원 옮김, 동서문화사, 2022, 173쪽.

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개개인의 판단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¹⁷⁾

여기서 홉스는 “한 사람 또는 합의체”라고 말한다. 즉 홉스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쌍방을 규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될 주체에 대해, 그 주체가 바로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홉스는 이러한 주체가 왕일 수도, 귀족일 수도, 민중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홉스의 최종 결론은, 이러한 주체가 왕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홉스는 여러 가지를 대고 있지만, 그 중 첫 번째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인격을 떠맡고 있는 자, 또는 그것을 떠맡고 있는 합의체의 성원인 자는 누구나 동시에 자신의 자연적인 인격도 떠맡는다. 그러므로 그는 정치적 인격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척이나 벗들의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맞서는 경우 대부분 사적 이익을 우선한다. 인간의 정념은 흔히 이성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이 더욱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공적 이익은 더 큰 추진력을 얻는다. 그런데 군주정의 경우에는 사익이 공익과 일치한다. 군주의 재산·권력·명예는 국민들의 힘과 재산 및 명성에서만 생겨난다. 국민들이 가난하거나 열등하거나, 또는 결핍이나 의견 차이 때문에 적과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하다면, 군주의 부(富)도 영광도 안전도 없다. 한편 민주정이나 귀족정에서는 공적 번영이라는 것이 부패한, 야심찬 사람의 사적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배신적인 조언, 배신적인 행동, 내전 등이 그러한 사람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¹⁸⁾¹⁹⁾

17)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76-177쪽.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민주정, 혹은 귀족정에서는, 집권자의 이익과 민중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지만, 왕정에서는, 집권자의 이익과 민중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 거짓이다. 하지만 홉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왕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홉스는 절대군주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 경우 왕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주권자 그리고 국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격을 맡는 사람을 주권자라 하며 ‘주권적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 밖의 사람은 모두 그의 국민이다.²⁰⁾

따라서 군주의 국민이 된 사람들은 그의 허가 없이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무질서한 군중의 혼란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자신들의 인격을 맡은 자에게서 인격을 돌려받아 다른 사람 또는 그들의 합의체에 넘겨줄 수도 없다.²¹⁾

국민은 주권자의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다섯째, 위에서 말한 내용의 결과로서 주권을 가진 사람은 국민에 의해서 처형되거나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처벌될 수 없다. 그런 처벌은 부당하다. 모든 국민은 주권

18)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92쪽.

19) 번역서에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민주정치나 귀족정치에서는 공공의 번영은 거짓된 충고나 배임행위 또는 내란이 자주 그러하듯이 부패한 야심가들의 사적 재산을 늘려주지는 않는다.” 이 번역은 오역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와 같이 수정했다. 영어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Whereas in a Democracy, or Aristocracy, the publique prosperity conferres not so much to the private fortune of one that is corrupt, or ambitious, as doth many times a perfidious advice, a treacherous action, or a Civill warre.” (Thomas Hobbes(Christopher Brooke (Editor, Introduction)), *Leviathan*, Penguin Books, 2017, 153쪽.)

20)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78쪽.

21)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79쪽.

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타인을 처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²²⁾

홉스는 영국 내전, 즉 청교도 혁명이 시작되는 1640년, 그의 나이 52세에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된다. 이는 홉스가 절대군주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청교도 혁명의 과정 중 의회파인 청교도들에 의해 영국의 찰스 1세는, 1649년 사형에 처해진다. 그 뒤 1651년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출간하고, 다음 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홉스의 위와 같은 견해는 찰스 1세에 대한 적극적 옹호로 이해될 수 있다.

2. 로크의 경우 - 다수가 주권자

로크 역시 전쟁상태에서 사회상태로의 전환을 언급한다. 사회상태에 대한 로크의 용어법은 여럿이다. 로크는 사회상태에 대해 ‘정치사회’, ‘시민사회’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사회, 시민사회는 입법부, 즉 의회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공체(the public)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자연상태에 있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최고의 통치권력 아래로 들어가 하나의 인민(people)이 되고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기 위해 사회에 가입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그밖에 어

22)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83쪽.

떤 사람이 이미 결성된 정부에 가담하여 그것과 일체가 된 경우에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그는 사회에 또는 그것과 다름없는 입법부에 사회의 공공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를 위해서 법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 그 재판관은 입법부 또는 입법부가 임명한 위정자이다.²³⁾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의 전환의 경우, 홉스는 전쟁상태에 있는 두 당사자를 조정할 권리를 왕에게 귀속시키는 반면, 로크는 이러한 권리를 의회에 귀속시킨다. 홉스와 달리 로크가 이러한 권리를 의회에 귀속시키는 이유는, 왕 혹은 절대군주에게 이러한 권리를 귀속시킬 경우, 그러한 상태는 사회상태가 아니라 전쟁상태이기 때문이다. 로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계의 유일한 지배형태로 간주되는 절대군주제가 실로 시민사회와 양립 불가능하며, 따라서 결코 시민적 지배형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건에 관해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폐단이 발생하는데, 시민사회의 목적은 그러한 폐단을 피하고 치유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은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침해를 받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호소할 수 있는 권위를 확립하고,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달성된다.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자연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모든 절대군주는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연상태에 놓여 있다.²⁴⁾

23)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 옮김, 까치, 2023, 90쪽.

24) 존 로크, 앞의 책, 96-97쪽.

절대군주는 혼자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주가 저지른 또는 그의 명령에 의해서 발생한 침해나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관, 곧 권위를 가지고 무사공평한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에 따른 구제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 있지 않다. 그러므로 [...] 그러한 군주는 그의 지배 밖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자연상태에 놓여 있다.²⁵⁾

지금까지 전쟁상태로부터 사회상태로의 전환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의 측면에서 이 둘은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즉 자연상태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세력에게 권력을 몰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이 다른 것은, 그러한 특정 세력이 무엇이나에 대한 것이다. 홉스의 경우, 왕에게 이 권력을 몰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크의 경우, 이러한 권력은 의회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청교도 혁명에서의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결국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왕의 권력이 의회로 이동한 결과, 의회파의 승리로 끝판났다.²⁶⁾ 필자는 이러한 권력의 이동이 정치적 자유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즉 한 사람의 권력으로부터 다수로의 권력 이동. 이것은 정의의 확대로 이해될 수 있다.

25) 존 로크, 앞의 책, 97쪽.

26) 고봉진,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미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법과 정책』,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56-57쪽 참조.

V. 소유에 대하여

1. 홉스의 경우 - 모든 것은 왕의 것

홉스와 로크의 차이는 정치권력에 대한 견해뿐만이 아니다. 이 둘은 사적소유에 대해서도 큰 견해 차이를 낸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홉스는 모든 소유권이 왕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로크는 모든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홉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 예수도 국민은 왕이 부과한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마태복음 22장 21절) 그리고 그 자신도 세금을 바쳤다. 또한 왕은 필요한 경우에 어떤 국민에게서나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고 그 필요를 판단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여 예루살렘까지 타고 갈 나귀와 나귀새끼들을 끌고 오라고 명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마태복음 21장 2~3절)²⁷⁾

주권자가 강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마지못해 비용을 대고 힘을 다하지 않으려는 국민들의 반항적 태도 때문이다.²⁸⁾

홉스에 따르면, 왕은 필요한 경우에 어떤 국민에게서나 무엇이든 가

27)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최공웅, 최진원 옮김, 동서문화사, 2022, 210쪽.

28) 토머스 홉스, 앞의 책, 189쪽.

저갈 수 있다. 이것은 세금의 문제이다. 왕이 전쟁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홉스 시대에 세금은 지방의 젠트리 계급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의 젠트리 계급이 농민들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젠트리 계급이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왕이 전쟁을 위해 세금을 건으려면,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왕과 의회는 세금을 매개로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실제로 1688년 명예혁명을 거친 후 제정된 권리장전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조세권과 징집권에 대한 남용을 의회가 견제하는 것이었다. 홉스는 사유재산에 대한 이러한 대립에 있어서도 왕의 편을 들고 있다. 세금에 대한 저항을 홉스는 “국민들의 반항적 태도”로 이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홉스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왕의 것이다.

2. 로크의 경우 - 소유의 정당화와 소유의 한계

재산에 대한 로크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화이다. 다른 하나는 사유재산의 한계에 대한 것이다. 로크는 사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한다.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person)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엇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 둔 공유의 상

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²⁹⁾

로크는 노동가치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사유재산을 정당화한다. 한마디로 “나의 노동이 섞이면, 그것은 나의 것이다.”

로크는 토지에 대해서도 노동가치설에 기반한 설명을 한다. 신에 의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공유지이다. 그 땅 위에서 자라는 식물을 따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고, 그 땅 위에서 뛰어노는 동물을 잡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된다. 원래 토지는 공유지이지만, 그 토지 역시 나의 노동이 첨가되면, 나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소유권의 주된 대상이 대지에서 나오는 과일 또는 거기 사는 짐승들이 아니라 그것들이나 다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지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획득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한 인간이 개간하고 파종하고 개량하고 재배하고, 그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가 그의 소유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이를테면, 그것을 공유지로부터 떼어내어 울타리를 친 셈이다.³⁰⁾

울타리를 치는 나의 노동이 투여되면, 공유지도 나의 소유가 된다. 노동가치설에 기초한 이러한 소유권의 확보는, 흡스와 근본적인 차이를 낸다. 모든 것은 왕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노동을 투여한 나의 소유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권력의 확산을 통한 자유의 확보와 정의

29)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 옮김, 까치, 2023, 37-38쪽.

30) 존 로크, 앞의 책, 41쪽.

의 실현 이외에도, 소유의 자유, 소유의 정의 확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유권은 이렇게 로크에게서 확대된다.

그런데 로크는 이러한 사유권에 제한을 건다. 하나는 토지에 대한 사유권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물에 대한 사유권 제한이다. 우선 생산물에 대한 사유권 제한에 대해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어느 누구든지 그것이 썩기 전에 삶에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다. 곧 그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로 확정할 수 있는 만큼 주셨던 것이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그의 몫을 넘어서며, 다른 사람의 몫에 속한다. 하느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썩히거나 파괴해버리도록 하지는 않았다.³¹⁾

“하느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썩히거나 파괴해버리도록 하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적 주장처럼 보인다. “썩으면 못 먹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이것은 명령에 관한 것이다.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토지의 수취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가급적 많은 야생의 과일을 모으거나, 많은 짐승들을 죽이거나, 사로잡거나, 길들인 사람은 자연발생적인 생산물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함으로써 자연이 방치한 상태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을 가하는 등 노고를 들인 사람이다. 그는 그런 행위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그가 소지하게 된 것들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상하게 되면, 곧 그가 소비하기 전에 과일이 썩거나 사슴고기가 상하게 되면, 그는 공통의 자연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

31) 존 로크, 앞의 책, 41쪽.

다. 그는 이웃의 몫을 침해한 것이다.³²⁾

“과일이 썩거나 사슴고기가 상하게 되면, 그는 공통의 자연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는 이웃의 몫을 침해한 것이다.” 이것은 사유재산의 한계에 대한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썩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법을 위반한 것으로, 즉 “신이 우리 정신에 새겨 놓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의 한계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 기반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한계가 도출된다.

동일한 기준이 토지의 소유에도 적용되었다.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개간하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상하기 전에 사용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고유한 권리이다. 그가 토지를 울타리로 둘러싸서 가축을 기르고 생산물을 사용하면, 그 가축과 생산물 역시 그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울타리를 친 부분의 잔디가 땅 위에서 썩거나 그가 울타리를 쳤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토지는 여전히 황무지[공유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³³⁾

이렇게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의 한계,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한계를 설정한 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 로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00부셀의 도토리나 사과를 모은 자는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그것들은 모으자마자 그의 재물이다. 그는 상하기 전에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몫 이

32) 존 로크, 앞의 책, 48쪽.

33) 존 로크, 앞의 책, 48-49쪽.

상을 취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셈이 된다. [...] 그러나 그가 자신의 소유물이 상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는 그것들을 이용한 셈이다. 만약 그가 또한 1주일이 지나면 썩을 것 같은 자두를 주고 1년 내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견과를 받았다면, 그는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은 셈이다.³⁴⁾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에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썩기 전까지이다. 썩힌다면, 그는 부정의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자연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썩기 전에 그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생산물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자연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 되고, 처벌의 걱정도 없다. 둘째, 교환을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처벌의 걱정이 없다. 썩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의 한계는 사라진다. 그 생산물은 자연법대로 해결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소유의 한계는 누군가에게 주거나, 교환을 하거나 하는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을 통해 사라질 수 있다. 썩지 않는 것, 즉 돈, 화폐와 바꾸는 것이다. 화폐의 등장을 통해, 썩지 않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가 정당한 소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가진 소유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상해서 무익한 것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47. 그런 식으로 화폐의 사용이 시작되었다. 화폐는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은 상호간 합의를 통해서 참으로 유용하지만

34) 존 로크, 앞의 책, 56쪽.

썩기 쉬운 생활용품과 교환하여 화폐를 받게 되었다.³⁵⁾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흠스로부터 로크까지의 사상 전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권력의 저변 확대이다. 흠스는 왕을 지지하는 방식의 사상을 펼쳤고, 로크는 의회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의 사상을 펼쳤다. 이것은 분명 자유의 확대라고, 그래서 정의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적 소유의 확대이다. 흠스는 모든 생산물과 토지를 왕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로크는 이러한 생산물과 토지는 거기에 노동을 섞은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 역시 소유의 자유, 혹은 소유에 대한 정의 개념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로크에 대한, 혹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운 점 하나를 지적하면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로크는 생산물과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썩기 전까지이다. 만약 생산물이 썩게 되면, 그는 자연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화폐의 등장으로 이러한 한계가 깨지게 된다. 썩어야 하는데, 썩지 않는 것이다.³⁶⁾

VI. 결론

정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답을 찾기 어

35) 존 로크, 앞의 책, 57쪽.

36) “마지막으로 노동 한계의 경우 화폐가 도입되면 개인은 타인의 노동을 고용함으로써 자신의 노동 한계를 넘어 사유 재산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강정인, 「로크 사상의 현대적 재조명: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대한 유럽중심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998, 57쪽)

럽다. 이에 대해 필자는 쉬운 답을 찾고자 한다. 질문을 바꿔보자. 어떤 것이 불의한가? 왕이 내 자식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은 정의로운가? 왕이 내 집문서를 빼앗는 것은 정의로운가? 홉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법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법칙 [...] 아무리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 자연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³⁷⁾

정의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은 이런 의미들을 분석한다. 하지만, 결국 정의란 다음과 같은 감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우리 정신에 새겨져 있다. 홉스의 말처럼, 사자에게는 이러한 원리가 새겨져 있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이러한 자연법의 원리가 그들 정신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37)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최공웅, 최진원 옮김, 동서문화사, 2022, 162-163쪽.

참고문헌

- 강정인, 「로크 사상의 현대적 재조명: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대한 유럽중심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998.
- 고봉진,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법과 정책』,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 새뮤얼 이녹 스티븐스 · 제임스 피저,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이광래 옮김, 열린책들, 2004.
-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 옮김, 까치, 2023.
-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최공웅, 최진원 옮김, 동서문화사, 2022.
- Thomas Hobbes (Christopher Brooke (Editor, Introduction)), *Leviathan*, Penguin Books, 2017.

【국문초록】

본 논문은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비교/분석한 후, 이 두 철학자의 서로 다른 입장이 정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이 두 철학자는 정의justice를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한다. 정의justice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데, 타인이 나에게 해줄기를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타인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타인이 나에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타인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정의를 이렇게 공식화하면, 홉스로부터 로크에 이르기까지 사회계약론의 변천 과정을 우리는 정의의 확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홉스의 경우, 서로에게 타인인 왕-국민 관계는 왕이 일방적인 우위를 가지는 관계가 되며, 이것은 역지사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지만, 로크의 경우 왕-국민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역지사지의 관계를 잘 보장하는 그러한 관계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두 가지 관점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정치적 역학관계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역학관계의 관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홉스의 경우,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며, 모든 것은 왕의 소유지만, 로크의 경우, 왕과 국민은 같은 권력을 가지며, 모든 것은 노동을 투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정의의 확대와 관련해, 사상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홉스, 로크, 정치권력, 소유권, 사적 소유의 한계, 화폐

【 ABSTRACT 】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al contract theory and the expansion of justice

Bak, Jechul

(Kangwon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Research professor · Modern philosophy)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social contract theories of Hobbes and Locke and shows how the differing positions of these two philosophers represent ideological progress in the expansion of justice. Both philosophers define justice similarly: it is rooted in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entails treating others as we wish to be treated while refraining from treating others in ways we believe they should not treat us. By formalizing justice in this manner, we can understand the evolution of social contract theory from Hobbes to Locke as an expansion of justice. In Hobbes's frame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the citizens—who are strangers to each other—is one in which the king has a unilateral advantage, which undermines the principle of putting oneself in the other's shoes. In contrast, Locke's model establishes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the citizens, guaranteeing this principle.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social contract theories of Hobbes and Locke from two perspectives: political dynamics and economic dynamics. Simply put, in Hobbes's view, the king has all the power and everything belongs to him, whereas in Locke's perspective, both the king and the people have equal power, with ownership tied to the person who invested labor. In this way, Hobbes's and Locke's social contract theories can be said to have made ideological progress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justice.

Key words: Hobbes, Locke, Political Power, Property Rights, Limits of Private Property, Money

투고 접수: 2024. 11. 18.	심사 완료: 2024. 12. 03.	게재 결정: 2024. 12. 04.
----------------------	----------------------	----------------------